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35
----------	-----

2024. 7. 22.(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7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7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7월 12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정국장 반주현)

가. 제안이유

-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투숙객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환급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근거 및 사업 추진 세부절차 근거 마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 가. (필요성) 코로나19의 영향과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관광객에게 외면받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체험객의 방문을 유도하고자 이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타당성) 이에 따라 투숙객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환급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봤을 때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 (법적합성) 「선거법」 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라. (종합의견)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환급을 통해 방문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다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세부 추진 절차를 마련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5
----------	-----

제출연월일 : 2024년 7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투숙객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환급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근거 및 사업 추진 세부절차 근거 마련(안 제5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해당없음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농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급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

2. 비용 발생 요인

- 농촌체험휴양마을 유가증권 구입비 보조 등(조례안 제5조제3항)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농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 대상 지급 유가증권 구입 보조비 등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 계 결 과 : 1,105,650천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 50%, 시군비 50%
-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 출	1,105,650	122,850	245,700	245,700	245,700	245,700
유가증권 구입보조	1,105,650	122,850	245,700	245,700	245,700	245,700

6. 작성자 :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강찬식